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1.30.(수)

책임자	금융위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이영직(02-2100-2780)	담당자	최성규 사무관 (02-2100-2782)
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진창(02-2100-2830)		김경호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손주형(02-2100-2860)		송희경 사무관 (02-2100-2862)

제 목 : 「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·시행

■ **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와 P-CBO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감면**

- ① **커버드본드(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)의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**
- ② **P-CBO(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) 발행의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* 면제**

* P-CBO 발행분담금 요율 : 0.05~0.07%

1. 추진배경

□ 금융위원회는 '19.1.30일(수)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「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을 의결

□ 금융감독원 수입예산*은 감독분담금, 발행분담금, 한은출연금 등으로 구성

* 금융감독원 수입예산('18년 기준) : 총 3,625억원, 감독분담금 2,811억원(78%), 발행분담금 682억원(19%), 한은출연금 100억원(3%)

○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·검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총부채, 영업수익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부담

○ 발행분담금은 주식,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

□ 발행분담금은 증권 종류, 만기 및 증권신고서 유형에 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차등 적용

* (채무증권) 만기 1년 미만 0.05, 1~2년 0.06%, 2년 초과 0.07%, 일괄신고서 0.04% (지분증권) 0.018%, (파생결합증권, 수익증권, 집합투자증권) 0.005%

○ 다만,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이나 부실금융기관의 구조 조정을 위해 발행한 증권 등에 대해서는 발행분담금이 면제

⇒ 현행 발행분담금 제도를 점검·정비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

2. 주요내용

◆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

○ 커버드본드(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)와 P-CBO(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증권)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*

* 「가계부채 향후 대응방안」(18.4월 발표) 및 결산국회 권고(18.8월) 후속조치

가. 커버드본드(Covered Bond)* 발행분담금 면제(§5①, ②)

* 금융회사가 담보자산 기초로 발행하며 투자자에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 부여

□ (필요성)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을 위해 장기·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

○ 커버드본드 활용시 다양한 장기·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에 有利

□ (개선사항)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전액 면제* (기존 0.04%)

○ 커버드본드 발행 비용을 선제적으로 경감시켜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이 변화할 경우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* 당초 발행분담금 요율을 0.04%→ 0.02%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, 적극적인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발행분담금 면제 결정

※ [참고1] 커버드본드의 개념

나.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(P-CBO)* 발행분담금 면제 (§5②)

*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: 低신용기업 발행 회사채를 유동화회사(SPC)가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여 유동화증권을 발행

□ (필요성) P-CBO는 낮은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○ 중소기업 등 시장참가자들은 P-CBO 발행에 따른 발행분담금 인하·감면을 희망

- 특히, P-CBO는 기초자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임에도 발행분담금을 전액 납부*하는 것은 다른 사례**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

* P-CBO 발행분담금 요율 : 0.05~0.07%(일반 채무증권과 동일)

** 중소기업 채무증권('13.10월), 코스닥 상장 주식('99.1월)은 발행분담금 면제

□ (개선사항) 전체 P-CBO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

○ P-CBO 발행분담금 비용 절감으로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

* 신보는 발행분담금 절감분만큼 중소기업 채권금리를 낮출 계획
→ 중소기업 비중 감안 시 연간 총 10억원 수준의 조달비용 절감효과 기대

※ [참고2] P-CBO 개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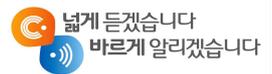
3. 향후 일정

□ 금융위원회 고시를 거쳐 '19.1.31(목) 시행될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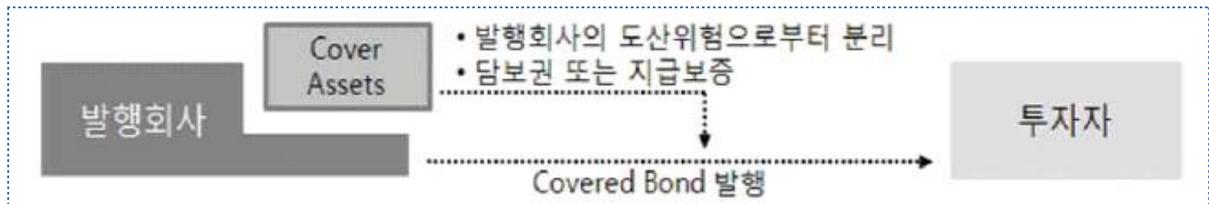
금융위원회 대변인
pfsc@korea.kr



참고 1

커버드본드(Covered Bond)의 개념

- (개념) 커버드본드(Covered Bond)는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이 부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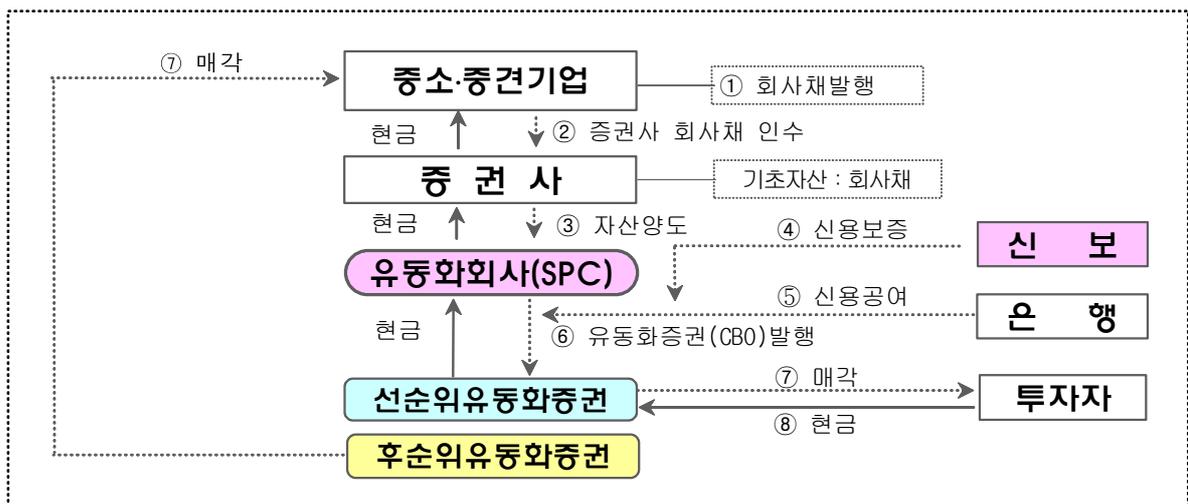
- (우선변제권)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
 - * 담보부사채는 우선변제권이 제한적으로 인정(발행기관 파산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,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담보권 행사 제한)
- (이중상환청구권) 투자자가 담보자산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한 선순위청구권 행사 가능
 - * MBS(주택저당증권, Mortgage Backed Securities)는 이중상환청권이 인정되지 않음
- (자산의 교체·추가) 커버드본드는 정기적인 자산 건전성 점검을 통해 자산을 교체·추가하여 만기시까지 담보력 유지
 - * MBS, 담보부사채의 경우 담보자산의 교체·추가 없음
- (기대효과) 다양한 정기·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등에 기여
 - 금융회사는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장기 발행한 커버드본드로 조성한 자금을 활용하여 장기·고정금리 대출 공급 가능
 - 커버드본드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위기상황에서도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가능

참고 2

P-CBO(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)의 개념

- (개념) P-CBO는 낮은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
 - 중소기업 등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*에서 매입하여 기초자산(유동화자산) 구성한 후,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
 - * SPC: Special Purpose Company
 - 해당 유동화증권*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최우량등급(AAA)로 상향
 - * 다만, 후순위 채권은 기업의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통상 해당 기업이 인수
 - 신용보강된 유동화증권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*에게 매각
 - * 통상, 연기금·보험사·자산운용사 등에서 매입

< P-CBO 상품 구조 >



- 중소기업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회사채 발행대금을 받고, 통상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
- (기대효과) P-CBO를 통해 중소기업은 장기간 고액(예 : 5억원 이상)의 자금을 안정적(고정금리)으로 조달 가능